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12. 10 선고 2020가합32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A

변론 종결2021. 11. 26.

판결 선고2021. 12.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9. 10.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0. 24. 접수 제536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1,026,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7. 11.부터 2018. 7. 1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C에 제공하고 C으로부터 1,1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간은 2020. 11. 6.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B은 2020. 3.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2. 10. C에 1,040,742,032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B과 2019. 10. 16.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0. 24. 접수 제53635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B은 2019. 10.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특별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19. 10. 16. 당시 1,078,666,740원이었고, 그 가치는 변론종결일 현재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마.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4. 5.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0,4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다만 별지 목록 순번 제3번 부동산의 경우 그 이후에 신축되어 2019. 10. 22. 공동저당물로 추가되었다), 2014. 10. 22. 채권최고액 804,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2019. 10. 말 기준으로 844,800,000원¹⁾ 이었고, D은 2021. 6. 29. 위 피담보채권을 비롯한 B에 대한 채권일체를 E 주식회사에 878,380,150원에 매각하였다²⁾.

바. 2019. 10. 16.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³⁾ 4) 5)

[표 삽입을 위한 공백]

1	C	1,290,000,000
2	F	47,000,000
3	D	972,971,663
4	G	458,000,000
5	H	12,000,000
6	I	10,000,000
7	J 조합	94,000,000
합계	3,365,971,663	
8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482,0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신용정보회신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B의 소극재산이 그 적극재산을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후 약 5개월 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L이 발주한 공사에 관하여

55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9. 12. 26. M 주식회사로부터 거액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나, B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이 L이 발주한 공사에 관하여 550,000,000원의 공사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이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자인하는 이상 위 채권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 보이며,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M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1,078,666,740원)은 D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844,8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가치는 일반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책임재산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가 실제로 B에 그 주장과 같이 3억 원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이와 관련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0. 24. 접수 제536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L이 발주한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M 주식회사로부터 2,078,648,000원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자료를 피고에게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L이 발주한 공사에 관하여 55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면 피고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가 M 주식회사로부터 거액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자료를 피고에게 보여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병삼

판사강민기

판사김재승

별지

1) = 100,000,000원 + 307,800,000원 + 437,000,000원(2021. 10. 28.자 금융거래정보회신)

2) 2021. 9. 29.자 금융거래정보회신 제6면 우측상단에 기재된 '매각: 878,380,150원' 참조

3) 원고는 2021. 8. 30. 준비서면에서 이와 달리 B의 소극재산액을 3,850,565,27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2021. 5. 10.자 신용정보회신서 제2면을 근거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2021. 5. 10.자 신용정보회신서 제2면의 내용은 K이 파악하고 있는 연체채무의 목록이고 2019. 10. 16. 당시의 소극재산 일체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2019. 10. 16. 당시의 소극재산

목록은 이와 가장 시점이 가까운 2019. 12. 말을 기준으로 조회된 내용(위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제12면 이하 '2019. 12.말 기준 업체별 월보 은행별계정과목별 조회(만기구조)'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4) 한편 위 자료는 대출채무와 입보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신용공여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대출채무와 입보액을 중복 합산할 경우 B의 소극재산액이 과다계산되므로, '대출채무액'만을 발췌하여 합산하였다.

5) D에 대한 채무의 경우, 2021. 5. 10.자 신용정보회신의 내용보다 2021. 9. 29.자 금융거래정보회신의 내용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여 2021. 9. 29.자 회신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다